

여행사 계약서

업 체 용

(주) 파라다이스 세가사미

외국인 관광객 모집·알선 계약서(여행사용)

(주)파라다이스 세가사미(이하 "갑"이라 칭함)와 _____(이하 "을"이라 칭함)은 "을"의 여행상품을 이용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이하 "고객"이라 칭함) 송객 알선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을"이 "갑"의 사업장으로 고객을 송객 알선함에 있어서 "갑"이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 쌍방의 협력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수료)

2.1 "을"은 "갑"에게 고객이 이용하는 가이드와 공동으로 고객을 송객하며, "갑"은 쌍방간 협의에 의해 별도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송객한 고객에 대하여 고객의 카지노 회원 등록 여부에 따라 아래 표에 명시된 송객알선 수수료를 지불한다 (VAT는 별도로 지급한다)

[카지노투어 수수료]

	수수료	내용
카지노투어	로스 7.5% or 기대수익 12.5%	반드시 "갑"의 카지노회원으로 등록 고객별로 정산

2.2 카지노투어 고객은 최초 방문하는 신규고객 ("갑"의 전산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고객) 또는 기 고객 중 1년간 방문 기록이 없는 휴면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2.3 "을"은 가이드와 공동으로 또는 "을" 단독으로 고객의 카지노회원 등록을 알선할 수 있는바, "을"이 단독으로 고객의 카지노 회원 등록을 알선한 경우 "갑"은 "을"에게 위 표의 '카지노투어 고객'에 대한 기준 수수료의 2배를 지급한다.

2.4 위 '카지노투어 고객'에 대한 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고객의 손실금과 기대수익(평균 배팅금액, 게임시간, 시간당 게임 수 등)을 감안한 "갑"의 ERP전산 시스템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2.5 위 '카지노투어 고객'에 대한 수수료는 카지노투어 고객이 카지노 회원 등록 당시 기재한 신청 기간 동안에 한하여 발생하며, "갑"은 고객이 기재한 신청 기간 동안 매월 단위로 해당 수수료를 산정하여 본 계약 제4조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2.6 "을"이 알선한 '카지노투어 고객'은 차후 방문부터 VIP로 이관 될 수 있으며, "갑"의 판단하에 가입 후 1년 내 최대 3회차까지 게임 기록에 근거하여 동일한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2.7 "갑"은 상당한 이유없이 수수료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 3 조 (구비서류 및 변동사항)

3.1 본 계약 체결 즉시 "을"은 "갑"에게 사업자 등록증 및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을" 명의의 국내 은행 예금구좌(수수료 수금용)를 개설하여 그 통장 사본을 "갑"에게 제출한다.

3.2 "을"은 사업자 등록증, 관광사업 등록증 및/또는 수수료 수금용 예금구좌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동사항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을"이 상호 변경 등을 이유로 새로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에 준하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4 조 (수수료 지급시기 및 방법)

4.1 "갑"은 매월 발생분 수수료를 "을"에게 통지하며, "을"은 해당 월 말일 기준으로 해당 월의 수수료를 확인하고, 늦어도 익월 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4.2 "갑"은, 제4.1항에 따른 해당 월 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3.1항에 따라 개설된 "을"의 예금구좌(수수료 수금용)에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 방법으로 해당 월 수수료를 지급한다.

4.3 "을"이 제4.1항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갑"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경우 해



TRA



1706